

공정거래위원회 어음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발표 하도급 60% 이상 현금지급업체 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어음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게 4월 1일부터 정부공사 입찰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입찰자격 사전심사의 신인도에서 받는 불이익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어음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60% 이상)이 높은 업체에게 4월 1일부터 정부공사 입찰에서 우대를 받게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공공공사 입찰자격 사전심사의 신인도에서 받는 불이익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업체를 제재할 때 기준이 되는 누적별점을 감점, 결과적으로 발주기관이 공공공사의 입찰자격을 사전심사할 때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을 완화토록 하는 방안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건설업종의 공사대금 현금결제비율이 지난해 40% 내외

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입찰참가 사전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업체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높은 기업이 하도급대금의 현금비중을 높일 경우 낙찰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여신지원 등의 지원조치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결제 비율에 따른 누적별점의 감점처리를 현금지급비율이 60~80% 미만인 업체의 경우 1점, 80% 이상은 2점으로 했으며, 이 경우 현금결제수단은 현금과 수표, 내국신용장은 물론 구매자금융과 구매전용카드나 팩토링에 의한 결제 등도 포함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별점관리를 3년 누적조치로 관리하고, 위반

유형별로 경고 1점, 시정권고 1.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점, 고발 2.5점의 별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누적별점이 4점 이상인 업체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 심사 때마다 불이익을 받고 과징금 부과회수가 늘어날수록 불이익은 가중되며 누적별점이 15점 이상일 때는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제한 받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적별점이 있는 업체가 4월 1일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거래은행이 발급한 현금결제현황확인서를 제출하면 추가 별점하지 않기로 했다.